

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(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 제1항에 따른)

-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, **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(경기주택도시공사)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, 수분양자가 먼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뒤 사업주체(경기주택도시공사)의 인지세 분담액(인지세의 1/2)을 분양계약자의 아파트 잔금에서 차감합니다.**
- **추가선택품목(유상옵션)은 선택품목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되며 인지세 납부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**
- ※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,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
- ※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, 공급질서 교란행위, 통장매매,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,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분담액(1/2)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 방법(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및 제8조)

구분		내용
대상증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계약서 :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(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) •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(유상옵션) 계약서 : 도급 증서(계약서 1통마다 납부) ※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
구입 방법	온라인	•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접속 →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
	오프라인	•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,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(방문 전 구매 가능여부 문의 요망)

■ 인지(전자수입인지) 납부액

구분	아파트계약서		추가선택품목(유상옵션) 계약서	
기재 금액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	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
납부 금액	15만원	35만원	2만원	4만원
매수인(계약자)부담액	7만 5천원	17만 5천원	2만원	4만원
매도인(사업주체)부담액	7만 5천원	17만 5천원	2만원	4만원

- ※ **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, 수분양자가 먼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뒤 사업주체의 인지세 분담액(인지세의 1/2)을 분양계약자의 아파트 잔금에서 차감.**
- ※ 발코니 확장 계약서의 경우, 전 타입 모두 확장공사비 1천만원 미만으로 수입인지 구매 불필요.
- ※ **계약체결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사본) 필히 첨부 하셔야 하며, 미지참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■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→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③ 납부정보 입력 및 구매
(※구매가능시간 00:30 ~ 22:00)

④ 출력 후 원본 보관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■ 오프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